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요트경기장 계류선박 선주님 귀하
(경유)

제목 여름철 자연재해(집중호우 및 태풍 등) 대비 계류선박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평소 요트경기장 이용과 운영에 협조해 주신 선주 및 관리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2. 매년 6~10월 사이 우리나라는 주로 여름철 대기 불안정 및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와 강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태풍은 평균적으로 9~12개 발생하여 평균 2~3개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요·보트 선주 및 관리자께서는 기상 특보 발효 시 선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에 따라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됩니다.
4. 기본적으로 요트경기장 계류시설은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하여 설계, 시공되어 그 당시 경기용 요트 수준의 크기와 무게의 요트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후 계류장 내 계류되고 있는 요트 및 보트의 대형화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계류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풍랑, 강풍, 태풍 상황 시 피항지로서 해상 계류는 적합지 않습니다.
5. 이에 태풍, 강풍, 파도 등으로 인하여 요·보트 간 충돌 등에 따른 파손, 침몰 등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뒷면에 기재된 「협조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개인 재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태풍 등)로 발생하는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요트경기장 관리사무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지하며 태풍 등 경보 시 피항지 않고 경기용 요트 이상의 대형 선박 계류로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파손 시 정도에 따라 원상 복구비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상특보 예보 시 선주 및 관리자 협조사항】

□ 요·보트 특성에 따라 선주 판단으로 사전 피항(육상으로 이동조치 등)

※ 각 폰툰 해상 끝단 인접하여 계류 중인 선박은 반드시 피항

⇒ 동·서편 해상출입구 인근 폰툰 끝단 인접 계류 선박 가장 위험

(18년 태풍 콩레이, 19년 태풍 다마스 내습 시 폰툰 끝단 인근 선박 침몰 및 파손)

□ 계류색 및 훈다 보강 / 선용품 등 기타 소유물건 유실, 도난방지를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

□ 파일에 계류색 고박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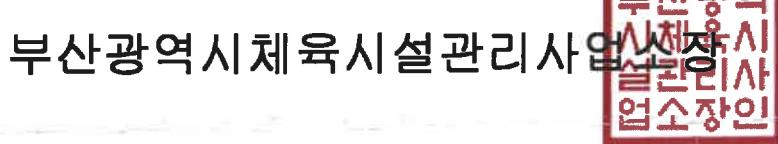
※ 부득이 파일에 계류색 고박 보강 시 폰툰 파일 표시선(형광색 야간 반사지) 위쪽

계류색(홋줄) 보강

⇒ 표시선 아래 계류색[홋줄(폐 홋줄) 등]은 자진 철거하여 주시고, 미철거로 인한 선박
파손 시 관리사무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붙임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 1부.

2. 폰툰 파일 표시선(형광색 야간 반사지) 위쪽 계류색(홋줄) 보강 현장사진 예시 1부. 끝.



주무관

이성진

요트경기장 관 16.
리장 양기조

전결 2021. 4.

협조자

시행 요트경기장-1350 (2021. 4. 16.) 접수

우 4809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부산요트경기장 / <http://stadium.busan.go.kr>
사무실 (우동)

전화 051-740-2219 전송 051-741-2280 / babo809@korea.kr / 대국민 공개

시민이 주인인 시정 참여 도시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2.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용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5해리) 이내의 연해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려는 경우
 - 나.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3.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4.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나.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 다.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5.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 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8.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9.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폭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폰툰 파일 표시선(형광색 야간 반사지) 위쪽 계류색(홋줄) 보강 현장사진 예시

